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1.

발 의 자 : 성일종 · 강승규 · 나경원
송석준 · 김미애 · 최수진
고동진 · 김석기 · 김용태
강명구 · 유용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,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·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,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

인·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,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,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).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0. 「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 인·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4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